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 2026 단체교섭 요구안

2026. 1. 6.

【공무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경북교육청지부장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공동교섭단

# 2026 단체교섭 요구안

### 전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및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경북교육청지부장(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의 권리와 노동조건 및 생활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이행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 【당사자】** 교섭의 당사자는 경상북도교육감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및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경북교육청지부장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교육감과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등을 말한다.

② “각급 기관”이란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행정기구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4조 【협약의 우선 적용】**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근무 기준 등에 관하여 법령·예산·조례 등이 본 협약과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이 법령·예산·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미 시행 중인 근무조건이나 조합 활동 관련 권리를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단체협약 성실이행】**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 및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사항을 문서화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한다.

②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 즉시 각급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고, 각급 기관장은 공문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등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④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점검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하였거나, 단체협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각급 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⑤ 교육감은 교장 자격 연수 시 단체협약에 대한 연수를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협약의 취지에 미달하는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하도록 한다.

⑦ 교육감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노동조건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존중한다.

⑧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시행하고,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협약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 문서를 노동조합에 반기별로 제공한다.

⑨ 교육감은 본 협약의 예산 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변경하거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한다.

⑩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각각 노사 동수로 ‘단체협약 이행점검단’을 구성하며, 운영 방법은 별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타 단체와 협의 시 지방공무원 권리 보장】**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을 타 단체와 동등하게 대우한다.

② 교육감은 타 단체와 단체교섭 또는 업무협의회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보하고, 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이나 이의제기를 협의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1. 각급 학교 행정실 소관 업무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조합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인권 보장,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감은 타 단체와의 단체교섭 등 협의 시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
- ④ 교육감은 타 단체와 단체협약 등 협의 결과를 이유로 기존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가 정원 확보 등 제도적 보완 없이 지방공무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근무조건 관련 사전협의】**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및 그 밖의 근무 조건과 관련된 정책·조례·규칙·훈령·행정지침 등을 제정·개정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고,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하여 상급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때, 노동조합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하여 제출한다.

**제8조【부당노동행위 금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다음 각 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 노동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2.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4. 노동조합을 차별대우하는 행위
5. 그 밖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에게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동조합은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조사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활동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침해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 처분한다.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각급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9조 【노동조합 전임자】** 교육감은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승급 등 인사상 신분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아니한다.

##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10조 【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 자주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3. 상급단체 및 연대조직의 회의 및 행사
  4.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대표자 면담(배석 · 참관 · 사진촬영 등 포함)
  5. 노동조합 주관 조합원 교육 및 문화 · 체육 행사
  6. 노동조합 주관 수련회
  7. 노동조합 선거 시 입후보자 선거활동 및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8.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활동
  9. 교육지원청과의 협의회 참석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른 행사 및 회의에 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
  11. 그 밖에 교육감과 합의한 행사
-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 지부 및 지회(이하 “지부 등”이라 한다) 활동에 적극 협조하며, 지부 등의 행사 개최 등 협조 요청 시 편의를 제공한다.
-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 지부 등이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지부 등의 중요간부(선출직)에 대한 인사발령 시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 ⑥ 교육감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에 통보한다.

- ⑦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고충 처리를 위해 현장 방문 및 면담을 하는 것을 보장한다.
- ⑧ 교육감은 각급 기관 업무분장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⑨ 교육감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기준 적용 시 최대 인원이 반영되도록 하고, 상급단체·연합·연맹단체 등의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11조【홍보활동의 보장】** ① 교육감은 소속 각급 기관과 부서의 홍보 게시판 등에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과 부서는 노동조합 홍보물 게시·부착·배포를 방해하거나 게시물을 임의로 훼손하지 아니한다.
-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홍보 및 공지를 위해 K-에듀파인 내부메일·메신저·방송 등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청사 및 소속 직원의 근무현장을 순회하거나 간담회(면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교육감은 경북교육 업무용 메신저의 조직도에 노동조합을 추가하여 조직도를 개선·운영한다.
- ⑥ 교육감은 경북교육 업무용 메신저에 노동조합 아이디를 부여하며 노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한다.
- ⑦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대외 공문 발송을 위한 K-에듀파인 시스템 이용을 보장한다.
- ⑧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메일을 활용하여 조합원에게 홍보 및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⑨ 교육감은 각급 기관 누리집 및 업무관리시스템 상에 노동조합 누리집 링크를 생성하고 유지한다.
- ⑩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각급 기관 내에서의 홍보용 현수막 게시 및 게시물 부착, 배포 등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 ⑪ 교육감은 각급 기관 내에 노동조합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 ⑫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 노동조합 홍보 시간을 보장한다.
- ⑬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공보담당 부서를 통해 언론 보도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

다.

**제12조【노동조합 활동 중 사고】**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전임자 또는 조합원이 교섭활동, 노사협의회,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중 부상·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제13조【조합원 교육활동의 보장】** ① 교육감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동전문 교육기관에서 노동조합 임원과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조합원에게는 기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신규공무원 연수 및 20시간을 초과하는 각종 연수 과정에 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1시간 이상 노동조합에 배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사 및 연수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조합원 교육을 근무시간 중 월 2시간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며, 이를 상시학습으로 인정한다.

⑤ 교육감은 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할 경우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하고, 강사와 강의 내용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⑥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각종 연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다.

⑦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때 공무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을 2시간 이내로 편성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가 해당 과목에 배정되도록 한다.

⑧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 지역별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을 부여한다.

**제14조【조합비 일괄공제】**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에서 해당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제15조【편의 제공 및 행사 지원】**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한다. 사무실은 본청 청사 내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청 인근에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임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 지부 등이 요청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노동조합을 위하여 물품

보관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과 운영비를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지원한다.
-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물 이용 요청 시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⑤ 교육감은 소관 각종 교육연구시설을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공공목적 수행 등으로 사용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⑥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⑦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공의 행사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행정기관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⑧ 교육감은 사무용 및 그래픽용 각종 소프트웨어 계약 시 노동조합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⑨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경북 교육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 발전에 관련된 설문조사에 유레카 설문조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⑩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행정기관에 노동조합 전용 공문함을 설치하고 그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제16조【문서 및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한다.

- 1. 각종 조례·교육규칙·규정의 공포 및 훈령 발령 사항
- 2.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사항
- 3. 각종 교육통계연보, 교육수첩, 교육행정자료 등 간행물
- 4. 각급 기관에 시행한 노동조합 관련 공문
- 5.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문서 또는 전달 가능한 형태로 통지한다.

- 1.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입법예고 사항
- 2.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인사·정책·조직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업무포털 및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하거나 노동조합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제공한다.

- 1. 각급 학교에 발송하는 교원단체와 관련된 공문서 및 단체교섭 체결협약서와 해설서

(타 노동조합)

2. 교육감 및 각급 기관 기구표
  3. 교육행정기관이 책자로 발간한 각종 교육계획 또는 업무편람(매뉴얼 포함)
  4. 지방공무원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총액인건비 포함)
  5. 교육행정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예·결산서, 사업설명서
  6. 주요 업무계획, 단체협약 해설서(타 노동조합)
  7. 의회 보고자료(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8. 그 밖에 노사가 합의한 사항
-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요청한 문서를 K-에듀파인(업무관리-문서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급 기관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도의회 서류제출】** ① 교육감은 도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된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회에 요청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요구하도록 도의회에 요청한다.
- ③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의회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18조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교육감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복지 및 그 밖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협의회, 공청회, 전담 조직(TF), 정책연구 등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19조 【노사협의회】**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협의 안건은 개최 10일 전에 통보한다.
- ③ 노사협의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자를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 수는 양측 협의로 정하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④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노사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 ⑤ 교육감은 합의서 내용을 각급 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며, 각급 기관장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⑥ 교육감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상황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시·군·지부 등과 연간 1회 이상 지역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1.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2. 교육장 소관 지방공무원 현안 사항
3. 그 밖에 교육장의 소관 사항

**제20조【대표자 협의 정례화】**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협의회를 반기별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제21조【교육감과의 대화 등】** ① 교육감은 6급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감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② 교육감은 시·군·지부 등별로 교육장과 6급 이하 조합원이 연 1회 이상 “교育장과의 대화”를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제3장 인사 및 조직

**제22조【인사의 원칙】** ①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조합원의 전보·승진 등 인사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② 교육감은 인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 일정이 확정되면 인사개요 등을 노동조합에 통지한다.

③ 교육감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교육감은 5년마다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거쳐 보직관리 규정을 정비한다.

⑤ 교육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전보인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별로 전보점수제를 적용한 보직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정기 인사 발령일 1개월 전에 승진·전보 임용 기준, 규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인사운영계획을 예고한다.

⑦ 교육감은 정기 인사 발표를 발령일 20일 전에 한다.

⑧ 교육감은 매년 1월 정기인사 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⑨ 교육감은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확대를 위하여 출산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 관련 특별휴가가 활성화되도록 안내하고, 대체인력 지원 또는 임신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⑩ 교육감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간 업무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업무대행을 지양하고, 대행공무원 채용 또는 전보 등을 통해 자체 없이 결원을 충원하도록 한다.

⑪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⑫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 시 생활근거지 및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발령하고, 조기 적응 및 행정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급적 교육행정기관이나 행정직원 2명 이상이 근무하는 학교에 배치한다.

⑬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실무요원 선발 인원 및 기준을 직렬별 특성에 맞게 조정한다.

⑭ 교육감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⑮ 교육감은 정기 인사 시 지방공무원의 인사 고충과 민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⑯ 교육감은 5급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 현 직급 학교 근무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한다.

⑰ 교육감은 도교육청 전입자를 선발할 때 학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전입시험(필기 및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다.

⑱ 교육감은 장애인 지방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인사 등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⑲ 교육감은 장애인 지방공무원의 신체적 조건, 특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한다.

⑳ 교육감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시행한다.

1. 근속승진 요건이 충족된 조합원에 대하여 전원 근속승진을 시행한다.

2.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7급 공무원이 정년 도래 시 상위 직급으로 승진 후 퇴직할 수 있도록 ‘정년 보상성 명예승진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제23조【성과상여금 지급 개선】** ①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의 참여를 보장한다.

③ 교육감은 성과상여금이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제24조【인사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교육감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3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제25조【결원 보충 및 인력 충원 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 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한다.

1.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동일 직렬에서 결원이 2년을 초과하여 지속되지 않도록 하며, 정규 공무원의 신규임용 또는 전보를 통해 결원을 신속히 보충한다.

④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가 겸임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정규 공무원 신규 임용 또는 대행공무원 임용을 신속히 실시한다.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긴급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겸임 발령을 하는 경우 본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겸임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공무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용한다.

⑥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결원 발생 시 교육행정기관 직원이 겸임하도록 한다.

⑦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을 겸임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범위 · 지급 기준 · 산정 방식 및 지급 방법 등 운영

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① 교육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근무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근무평정 단위를 분리한다.

② 교육감은 인사발령 후 1개월 이내에 본청,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별 승진 분포 비율을 공개한다.

③ 교육감은 기피·격무 부서 근무자 등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조직·인력의 적정 배분】**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 조직 진단 시 조직·인력의 적정 배분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교육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배정 방식에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별, 직능별로 배정하는 등 학교 현장에 맞게 개선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진단 결과와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정원의 5%를 추가 확보한다.

⑤ 교육감은 총액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그 사용 내역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⑥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노동조건 개선 및 근무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하여 정원 확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⑦ 교육감은 복수직렬 정원 책정 시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의 정도·전문성·연속성 및 소수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⑧ 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한 일반직의 상위직급 정원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⑨ 교육감은 모든 학교의 행정실장을 6급 이상으로 보직한다.

⑩ 교육감은 전문직렬(소수직렬)의 경우 상위 직급의 정원 책정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다른 직렬의 상위 직급 비율과 형평성에 맞추도록 노력한다.

⑪ 교육감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군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전산직렬 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⑫ 교육감은 사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사서직 공무원 정원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 배치하고, 신축도서관 개관 시 법정 사서 배치 기준을 반영하여 개관 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적절한 시기에 배치한다.

⑬ 교육감은 공공도서관 사무직렬의 정원을 사서직 정원으로 충원하여 이용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⑭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 점검, 유해업소 점검 등 보건 업무의 증가에 따른 보건직 공무원의 충원 노력을 통해 보건직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제28조【행정실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 설치 근거를 명시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이 통합하여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 행정실 사무공간이 없는 학교의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 적정한 규모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환경 개선에 따른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9조【행정직원 인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무원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및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30조【교육훈련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 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④ 교육감은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지원청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원의 일부 교육 과정을 ‘찾아가는 연수’ 방식으로 운영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인다.

⑥ 교육감은 운전직·조리직 공무원 등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등 교육훈련을

방학 기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학교 시설관리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⑧ 교육감은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 연수를 위하여 원격·집합 등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⑨ 교육감은 시설관리직·조리직·운전직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직무 관련 연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⑩ 교육감은 신규 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⑪ 교육감은 내실 있는 온라인 연수를 위하여 재택 온라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⑫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6급 장기 교육훈련 과정 및 5급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과정 등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때 소수직렬도 균형 있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⑬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6급 또는 7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직급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분할 운영할 수 있다.

1. 6급: 60시간 이상

2. 7급: 30시간 이상

**제31조【공로연수】** ① 교육감은 직급별 공로연수 지원비 지원 기준 격차를 완화한다.

② 교육감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공로연수를 실시할 때, 해당 직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원 간 연구회·동아리 지원의 격차가 해소되도록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④ 교육감은 교육행정 연구 및 연구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배치한다.
- ⑤ 교육감은 본청 내 교육행정연구모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 연구모임 활동을 지원한다.
- ⑥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행정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직급 또는 권역을 기준으로 행정실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제33조【지방공무원의 표창 기회 확대 등】**
- ① 교육감은 모범공무원, 경북교육발전 유공 등 표창 대상자 선정 시 지역, 기관, 직렬 간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 ③ 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포상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포상 체계를 개선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 기회를 확대한다.
  - ⑤ 교육감은 매년 경북교육상을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한다.
  - ⑥ 교육감은 노사관계 발전 유공 포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표창한다.

- 제34조【국외연수 등】**
-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규모를 매년 확대한다.
  - ② 교육감은 국외연수의 운영 방식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직종·직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과 국제적 감각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행정 연구 모임·학습동아리 등의 주제별 국외연수 및 견학 기회를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다.

#### 제4장 노동조건 개선

- 제35조【근무시간 및 점심·저녁시간의 준수】**
- 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근무시간 외에는 조합원의 자기계발 등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시간외근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급 기관장과 부서장을 지도한다.
  - ③ 교육감은 근무시간 외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파견하거나 근무하게 할 경우 관련 규

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정상 근무일이 아닌 날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보장한다.

④ 교육감은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점심·저녁시간에 근무한 조합원에게 별도의 식사 시간을 보장한다.

**제36조【유연근무제】** ① 교육감은 원거리 출퇴근자의 편의 도모 및 자기계발을 위해 유연근무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③ 교육감은 임신·출산·육아·간병 등의 사유로 재택근무가 필요한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재택근무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휴일근무 및 행사지원 근무 시 조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비상소집 등 비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일정 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당직근무 외】** 교육감은 공무원이 출근 전·퇴근 후 근무시간 외에 학교 출입문을 개폐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39조【지방공무원 동원 금지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이 주최·주관·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인원 할당 방식으로 동원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에 대한 성금 등의 금품 강제 모금 행위를 금지한다.

③ 교육감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행정실 지방공무원 동행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제40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①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습휴가를 장려하고,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연 30만 원 이상 지급하며, 매년 그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다.

**제41조【포상휴가】**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제12항에 따른 포상휴가 운영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 제42조【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한 계약직 인력의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소규모 학교 1인 행정실장의 업무 경감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등록된 직장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④ 교육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지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에 시설관리직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⑤ 교육감은 시설관리직·운전직·조리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대비 승진 비율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⑥ 교육감은 도서관의 안정적인 주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인력을 연중 지속적으로 배치한다.
  - ⑦ 교육감은 경증 장애인 중 보조공학기기나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조합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 및 교육훈련 참여를 위하여 보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한다.

- 제43조【시설관리직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 ①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도급 및 용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을 위한 품의 권한을 보장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한 학교시설관리를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학교시설관리 개선 방안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 기관 시설의 사용자 편의 증진, 시설 자산 가치 보존, 운영 효율성 극대화,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시설관리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범 교육지원청 및 시범 학교를 지정·운영한다.
  - ④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업무일지 강제 작성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원 또는 교육지원청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한다.

- 제44조【조리직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 기준을 결정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 ② 교육감은 조리직 공무원(이하 ‘조리사’라 한다)의 직무연수 및 정보화 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련 협의 시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교육감은 각급 기관 조리 업무 종사자의 직업성 질환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 ⑤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 과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기본방향 중 조리사 직무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 ⑥ 교육감은 유치원과 1일 2·3식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⑦ 교육감은 조리사의 휴게실과 샤워실(화장실 포함)을 남녀로 구분하여 신설 및 현대화 사업에 반영하고, 기존 학교의 경우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식단 작성 시 조리 공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리사와 협의하도록 한다.
- ⑨ 교육감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하여 중단된 공무원 조리사 신규 채용을 재개한다. 다만, 신규 채용이 불가할 경우 정원 운영을 이유로 공무원 조리사의 전보 기회가 축소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⑩ 교육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조리사에게 전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⑪ 교육감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조리사와 공무직 조리사의 인사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⑫ 교육감은 합리적인 정원 조정을 통하여 신설 학교에 조리직 정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 ⑬ 교육감은 방학 및 휴업 중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⑭ 교육감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조리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조리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 ⑮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급식 담당 부서에 조리사를 배치한다.

- 제45조【운전직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① 교육감은 매년 통학차량 운영 지침을 수립 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 ②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운전직 공무원의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일 공용차량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감은 운전직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 ④ 교육감은 운전직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운전자보험에 일괄 가입한다.
- ⑤ 교육감은 운전직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량 수리비 등 손해배상 책임을 운전직 공무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 ⑥ 교육감은 운전직 공무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적정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⑦ 교육감은 운전직 공무원의 일시적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실질적 ‘대체 인력풀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⑧ 교육감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및 운전직 공무원의 안전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53조3에 따른 안전교육 외에도 동승 보호자 자체 안전교육을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실시한다.
- ⑨ 교육감은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해 1주일 이내 차량 점검 기간을 확보한다.
- ⑩ 교육감은 통학차량 공동운행을 시행하는 경우 운전직 공무원과 협의한다.
- ⑪ 교육감은 학구 밖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통학차량을 재배치할 경우 운전직 공무원 근무 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⑫ 교육감은 운전직 공무원이 급식 차량을 운행할 경우, 급식 중 대기 장소를 제공하고 운행 종료 후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 ⑬ 교육감은 통학차량 구입 시 안전 관련 선택사항(옵션)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⑭ 교육감은 늘봄학교 등 정규 근무시간 이후 운영 프로그램으로 인한 학생의 등·하교 지원을 이유로 통학차량 운행 부담을 운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⑮ 교육감은 학교통학차량 운전직 공무원의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 특근매식비를 지급한다.

**제46조 【업무추진비의 운영 개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일반업무추진비 계상 한도액 범위에서 행정실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7조 【피복 지급】** 교육감은 공사감독, 시설관리, 조리, 운전 등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의 피복비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한다.

## 1. 공사감독 및 검사

2. 시설관리
3. 조리
4. 운전 및 차량 관리
5. 그 밖에 피복이 필요한 특수 업무

**제48조 【특수업무수당(중요직무급) 지급】** ① 교육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중요직무급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기준, 지급 기간 및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하며, 노동조합의 의견이 운영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한다.

1. 1인 행정실장
2. 유치원 및 2·3식 조리교 조리직 공무원
3. 급식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직 공무원
4. 시설관리직 공무원 결원으로 인해 시설관리 업무 일부를 대행하는 지방공무원
5. 결원 대체인력 채용으로 결원공무원의 업무를 일부 분장받은 공무원
6.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49조 【특정업무경비 지급】**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경우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다.

1. 학교폭력
  2. 학교체육
  3. 평생학습(평생학습관)
  4. 시설사업 예산
  5. 그 밖에 노동조합과 협의한 특정 업무
- ② 교육감은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경우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2.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전기, 가스, 승강기, 소방 등)
  3. 그 밖에 노동조합과 협의한 특정 업무

**제50조 【지방공무원 여비 등 지급 현실화】**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장 시 「공무

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여비를 감액하거나 제한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상시학습 시간이 인정되는 교육 및 연수에 대하여, 노동교육 또는 노동조합 관련 교육이라는 사유만으로 여비 및 교육 경비의 지급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지 않는다.

**제51조【모·부성 권리 보장】** ① 교육감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 및 부성 보호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승진, 전보, 평정, 경력, 유급휴가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교육감은 임신 중인 조합원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야간근무·휴일근무·비상근무·숙직근무 등에서 제외한다.

③ 교육감은 미취학 자녀(영유아 포함)를 양육하는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숙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④ 교육감은 임신 16주 이하의 여성 지방공무원이 임신 안정기까지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한다.

**제52조【보육시설】** ① 교육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 자녀의 위탁보육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③ 교육감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직원이 이용하는 보육 시설의 위치와 관계없이 요일제 차량 제한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한다.

④ 교육감은 여성휴게실 내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수유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수유실을 설치한다.

**제53조【일·가정양립지원】** ① 교육감은 임신 중이거나 생후 36개월 미만의 유아를 양육하는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의사를 반영하여 업무 부담이 적절한 부서(근무지)로 배치한다.

② 교육감은 여성 조합원이 매월 여성보건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여성 화장실에 비상용 여성용품, 선반, 비데 등 위생시설을 비치·설치한다.

③ 교육감은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직 발생 시 적기에 대체인력과 예산을 확보한다.

- ④ 교육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5일 이상 복직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 ⑤ 교육감은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전보 및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⑥ 교육감은 남성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54조【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금지】** ① 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육체적·시각적 행위 등 모든 성희롱을 금지하며, 정기적인 예방 교육 및 필요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

- ② 교육감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보호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가해자와 즉시 분리(전보 또는 격리 등)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 ③ 교육감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 내용에 따라 치유를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 ④ 교육감은 성폭력 또는 성희롱 사건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다.

**제55조【성평등】** ① 교육감은 민원 부서 등 특정 부서에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보직 관리를 시행한다.

- ② 교육감은 각종 행사에 특정 복장 착용을 강요하거나, 근무 중 차 접대, 민원 안내대 배치 등 성별에 따른 차별적 업무지시를 금지한다.
- ③ 교육감은 직원의 복지·인사·보수·수당 등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56조【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 ① 교육감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 보수, 수당, 복지 등 노동조건 전반에서 차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교육감은 출산·육아휴직 및 공무상 질병휴직을 이유로 전보 순위 명부 작성 시 가점 평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 가점 기준을 마련하여 휴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제57조【지방공무원의 업무 경감】** ① 교육감은 행정실 지방공무원이 행정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분장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교수학습 활동에 관련된 업무
2. 교원인사, 교원상훈, 교원복무, 교원인사기록카드 정리, 교원호봉획정, 각종 강사(수업결원대체강사, 전일제강사,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등) 채용 및 계약
3. 학교안전공제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4. 교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공문서 및 교원이 처리할 업무
5. 학생 전출입(입·퇴학) 교무학사 업무
6.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행사 시 다과 준비 전담
7. CCTV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방학기간 중 교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업무를 교무영역과 행정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교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특정 직렬이나 지방공무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보고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 생략을 원칙으로 하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추가적인 업무 전가를 금지한다.

⑥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학생 대상 안전교육(화재·재난 등 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등) 업무는 지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⑦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⑧ 교육감은 학교장이 업무의 성질과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직원 간 업무가 적정하게 분장되도록 지도한다.

⑨ 교육감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5년마다 ‘학교 업무 분장 표준안’을 개정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⑩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교직원 연립관사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업무 경감을 위하여 외부 용역업체 위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사 관리에 따른 업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8조【지방보조금 정산 업무 개선】** 교육감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서류를 각급 학교에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보조금 정산 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제59조【학교 업무 경감 추진】** ① 교육감은 학교 업무 경감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지방공무원·교원·교육공무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조직 진단 및 직무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인력 및 업무 배분을 최적화하여 학교 업무를 경감한다.

④ 교육감은 신설 및 폐교 예정 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교직원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웹 기반의 학교 업무 매뉴얼을 상시 관리하고 최신 정보를 유지한다.

⑥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위임전결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며, 전결권자가 책무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장을 지도·감독한다.

⑦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 결재권자의 권한을 실무자 중심으로 하향 조정하여 결재 단계를 축소하도록 권장한다.

⑧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 직접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 관리에 대하여 외부 위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선거 관리에 종사한 지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거관리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특별휴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각급 학교 행정지원 강화】**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학교지원센터 등을 통해 학교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감은 5천만 원 이상의 시설사업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인사기록 관리를 단계적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사회보험 및 퇴직금 관리는 즉시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도록 한다.
- ④ 교육감은 일반직 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연수 과정에 1시간 이상의 학교 현장 이해 과정을 편성하고, 행정실장 등 내부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⑤ 교육감은 각종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회 및 외부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이를 우선 활용하며, 학교로의 추가 자료 요구를 최소화한다.
- ⑥ 교육감은 나이스(NEIS) 및 K-에듀파인 등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학교에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 ⑦ 교육감은 각급 시범학교·연구학교 지정 시 지방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한다.
- ⑧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와 위상에 맞는 호칭 사용을 권장하며, ‘주무관’ 또는 ‘선생님’ 등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 ⑨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1명만 배치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업무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⑩ 교육감은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 업무의 범위가 명확히 준수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 업무가 지방공무원에게 전가되어 업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⑪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한다.
- ⑫ 교육감은 교무실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복무 등의 업무를 행정실에서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⑬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지원센터에 요청한 행정지원 업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 제61조 【늘봄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해 지방공무원의 행정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며, 늘봄실장 및 늘봄행정실무사에게 배정된 업무가 학교 행정실로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 분장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② 교육감은 늘봄행정실무사 배치 학교에서 인건비 소요액 보고, 방과후강사 4대보험료 산정 등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행정 업무가 행정실에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하며, 해당 업무는 늘봄지원실에서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여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고,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제62조【교육시설통합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시설통합관리 업무가 학교에 전가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안전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전문기관 위탁, 기술 지원 용역 등 전문성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제5장 후생복지

**제63조【후생복지제도】** ①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하거나 운영할 때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비 예산의 증액 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 제도상 기본점수가 상향 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4조【후생복지시설 확대 및 문화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소속 공무원이 최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교육감은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방공무원 복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공간 이용 시 지방공무원이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5조【체육시설 설치 및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① 교육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 형성을 위하여,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관련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 마음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제66조【조례 제·개정】**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사업의 확대 및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② 교육감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새내기 휴가, 장기재직 휴가, 학습 휴가 등의 일수가 전국 시·도 교육청 평균 수준에 미달하거나 확대가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7조【언론보도】** ① 교육감은 왜곡된 언론보도로 인해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노동조합 또는 피해 조합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발표 및 홍보를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하며, 직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관리한다.

③ 교육감은 언론사 등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홍보 담당 부서에서 일괄 수렴하여 제공하도록 하며, 개별 학교나 부서에 직접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68조【상시출장 근무자 차량 지원】** 교육감은 상시적으로 현장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차량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69조【학교시설 개선 및 행정실 면적 확보 등】** ① 교육감은 학교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 행정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 적정 면적(66㎡ 이상)을 확보하고 문서실, 탕비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사무용 책상·의자 등 집기 및 컴퓨터 등 필요한 사무기기를 제공하여 행정사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행정사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1인 1대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제공하고, 노후 기기 교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 또는 공기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 ⑥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서 직원의 좌석 배치 시 직종이나 직렬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⑦ 교육감은 신설 학교 설립 시 숙직실 내부에 화장실 및 샤워실을 설치하고, 인쇄실(3m<sup>2</sup> 이상), 문서실(66m<sup>2</sup> 이상), 창고(120m<sup>2</sup> 이상) 등 필수 업무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⑧ 교육감은 신설 학교의 행정실 배치 및 공간 구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한다.

**제70조【각급 기관의 복지시설 확충】**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냉·난방 시설 등 필요한 복지 시설이 각급 기관에 설치 및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법령 기준에 맞게 갖추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휴게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적정한 면적과 비품(냉난방, 소파 등)을 구비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설 및 전면 개축 학교의 설계 단계부터 복지시설 공간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조치한다.

**제71조【스마트워크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이 필요 시 본래의 사무실 외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 내 스마트워크센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이용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안내한다.

③ 교육감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 수행이 원활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와 업무환경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④ 교육감은 임신·출산·육아·간병 등 여건상 스마트워크 근무가 필요한 직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 가능한 직무로 조정하거나 적합한 직무가 있는 부서로 전보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을 한다.

**제72조【교육행정기관 직원 식당 운영】** 교육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소재 교육행정기관의 상시 근무 인원이 50명 미만일 경우 직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73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등】** ① 교육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연수 기회 우선 부여, 근무부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교직원 연립관사를 확충한다.

③ 교육감은 시·군 간 이동이 잦은 직무를 수행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교직원 연립관사 배정 시 근무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제74조【수익사업 지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제75조【퇴임식 개최】** 교육감은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소속 기관별로 명예로운 퇴임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제76조【재난 발생 시 지방공무원 보호】** 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없는 재난·사고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 또는 분쟁에 휘말린 경우, 공무원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소송 비용 지원 및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교육감은 재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 조합원 및 해당 기관이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 관련 사실관계 조사나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에 조합원이 임할 때,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77조【지방공무원의 인권 및 건강 보호】** 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청원한 경우,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체 없이 조사하고 그 진행 상황과 결과를 노동

조합에 안내한다.

②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육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의뢰, 피해 조합원 보호 및 가해자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78조【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혜택 개선】** ① 교육감은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복지혜택 중 직종 간 차등 적용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② 교육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에 참여하는 대의원 등 직원 대표를 선출(추천)할 때,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79조【장례 실시 및 장제용품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공무 수행 중 순직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유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상북도교육감장(葬) 또는 소속 기관장장(葬)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장례 발생 시 필요한 장제 용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장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0조【건강관리】**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일반건강검진, 사후관리, 특별건강검진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② 교육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확진 검사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의 확진 검사를 공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개정을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심리·정서 건강 지원을 위하여 ‘교직원치유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④ 교육감은 종합건강검진 항목을 성별·연령·직무 특성 및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구성하고, 검진 내용 및 지정병원 운영 등 세부 사항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교육감은 주요 암 검진 및 중증질환 정밀 검사 시 종합병원과 협약을 통해 조합원이 비용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⑥ 교육감은 직장 내에 혈압측정기 등 기초 건강 체크를 위한 장비를 비치하도록 지도 한다.

⑦ 교육감은 건강검진 결과가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건강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제81조【재해예방 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및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연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위험성 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교육지원청별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③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든 종사자의 악성 민원 피해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2. 모든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3. 인력 부족이 재해의 주요 원인인 부서의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및 위험성 감소 대책에 관한 사항

**제82조【악성 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① 교육감은 악성 민원 대응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인사부서로 지정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한다.

② 교육감은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악성 민원인에 대한 출입·퇴거 조치 기준과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

③ 교육감은 악성 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남·여 고충상담원 각 1명을 전담 배치한다.

④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사건 인지 후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등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 기관장에 대한 문책 등 징계 근거를 마련한다.

⑤ 교육감은 악성 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83조【교육감의 의무】** ① 교육감은 모든 지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소속 직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인력·제도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사업주로서의 안전보건 의무와 책임을 관리감독자에게 전가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이행 조치를 직접 관리한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속 직원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84조 【관리감독자】** 교육감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자가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 부여와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제8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② 교육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③ 교육감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자체 교육을 실시한다.

**제86조 【가스 등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가스 안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간 1회 각급 기관의 월 사용 예정량을 전수조사하고 월 사용 예정량이 4천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각급 기관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② 교육감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사용 예정량이 4천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각급 기관의 가스 안전점검 및 기술관리 등 실무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내에 각급 기관의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교육감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안전관리자를 부적정하게 지정하거나 선임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이 발주하는 학교시설 개선 등 공사 시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 제6장 공직사회 개혁 및 교육부 등 관계기관 건의

**제87조【「초·중등교육법」 개정 건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교원 대표”를 “교직원 대표”로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2. 학교 내 행정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실 법제화를 추진한다.

**제88조【연금제도 개정】** 교육감은 공무원연금법이 부당하게 개정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한다.

**제89조【공무원보수·수당 규정 개정】**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삭감 제도 폐지를 건의한다.

- ② 교육감은 장기 근속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근가호봉 신설을 건의한다.
- ③ 교육감은 시간외근무수당 중 정액분을 기본급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한다.
- ④ 교육감은 총액인건비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전 상정 등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단가를 평준화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한다.
- ⑥ 교육감은 성과상여금이 지방공무원 보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한다.
- ⑦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출장 시 계급별 등급에 의하여 지급하는 현행 여비규정을 폐지하고 평등하게 지급되도록 여비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

**제90조【관리수당】** 교육감은 유.초.중.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91조【특수업무수당 병급 및 현실화】** ①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이 병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한다.

- ② 교육감은 사서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수직무수당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92조【가족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부양가족 전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부양가족 1인당 월 50,000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한다.

**제93조【장애인보조수당 신설】** 교육감은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 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한다.

**제94조【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교육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대학생 자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한다.

**제95조【각급 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지급】**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관리 책임이 막중한 행정실장에게 실질적인 직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당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

**제96조【특수업무수당 인상】** 교육감은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한다.

**제97조【업무대행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한다.

**제98조【운전직 공무원 대체인건비 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운전직 공무원의 대체 인건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99조【위험수당 지급 대상 확대】** 교육감은 방역, 전기,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가스 등 유해·위험 작업에 상시 노출되는 시설관리 및 관련 직렬 공무원에게 위험수당을 지급되도록 건의한다.

**제100조【민원업무수당】** 교육감은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기관 및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이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1조【특수지근무수당】** 교육감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차기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을 규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2조【기술업무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시설·공업·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설계·감독·감리 등 전문성과 위험성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업무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한다.

**제103조【병가 증빙 서류 간소화】** 교육감은 연간 누적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를 현행 「진단서」에서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

- 제104조【감사 개선 등】**
-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학년 초에는 학교 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각종 감사 시 감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요구를 제한하고, 감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 ④ 교육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이미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감사를 지양하며, 종전 감사 결과를 활용한다.
  - ⑤ 교육감은 각종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계량화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이스 및 에듀파인 시스템 등 DB 기반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의회·감사원 등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각급 기관의 자료 취합 부담을 최소화한다.
  - ⑥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청구한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지한다.
  - ⑦ 교육감은 상급자의 불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자에게 동반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한다.
  - ⑧ 교육감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각급 기관에 대하여 차기 정기종합감사 1회를 면제한다.

- 제105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
  - 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능이 학

사에 관한 업무가 주된 것이므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7조의 사무분장 중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를 본청은 교육국,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분장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심의사항에 추가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법령상 부여된 권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제106조【행정업무 운영 등에 관한 교육】** ① 교육감은 교장, 교감, 교사 자격 연수 시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공문서 관리, 관인 관리, 업무인계인수 등)을 1시간 이상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신규 임용, 1급 정교사·교감·교장 자격연수 등 교원연수과정에 학교회계 및 에듀파인 시스템 교육을 의무 교육 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제107조【내부고발자 보호】** ① 교육감은 부당한 지시나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에 대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엄수하여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는다.

②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경우, 감사 및 조사 진행 상황 및 그 결과를 해당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안내한다.

③ 교육감은 내부고발자의 신변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④ 교육감은 민원 제기자 또는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 등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 또는 암시하는 행위를 중대한 징계 사유로 간주하며, 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한다.

**제108조【업무갈등 해소】** ① 교육감은 여러 업무가 혼재된 공문으로 인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공문 발송 시 수신처와 담당 부서(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발송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직원의 업무분장을 결정할 때, 행정실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며 행정실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직종 간 업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업무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09조【노동기본권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신장과 민주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법령의 제·개정 전이라도, ILO 협약의 권고 취지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2조【보충 협약 및 재교섭】**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정책적 변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 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제3조【공동 해설집 작성】**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 해설집을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급 기관에 배포한다.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사관계 법령 및 노동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이행방법 등】**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협약체결 후 지체 없이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에서 미 이행 학교에 대한 이행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행정지도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 측에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조치 또는 징계 등 엄중히 문책한다.  
③ 교육감은 협약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 법령 및 예산 편성 지침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문 제5조제10항에 따른 ‘단체협약 이행점검’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상호 합의하여 시행한다.  
⑤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연 2회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비 사항은 즉시 개선한다.

**제6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5부를 작성하여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